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09. 11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##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09. 11. .

#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호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1. .  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의정활동비·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함(안 제6조)

1) 월정수당 월 1,311,670원 → 1,566,660원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 
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월 1,311,670원” 을 “월 1,566,660원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  
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월정수당은 <u>월 1,311,670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월 1,566,660원</u>-----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33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 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 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33조 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 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  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